

## 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상호(기관명)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법인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신청범위	(필요시 별지 사용)		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

귀하

붙임서류	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.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·인력 및 시험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.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.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등기사항 증명서	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 (서류심사)	→	현장심사 및 결재	→	지정서 작성	→	지정서 발급
신청인		행정안전부 (승강기담당부서)		행정안전부 (승강기담당부서)		행정안전부 (승강기담당부서)		행정안전부 (승강기담당부서)		